

#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’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맞게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확대(안 제3조)
- 나. 금연구역의 표지판 및 설치방법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(안 제5조)
- 다. 과태료부과는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삭제(안 제7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
- 나.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의 별표2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**7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**

○ 입법예고기간 : 2017. 5. 25. ~ 6. 14. (20일간)

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건강증진과**

##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, 택시 승차대

제5조제2항 중 “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의 별표2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보건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과장 이 주 윤
	팀장 직위·성명	건강증진팀장 김 선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박 미 현 (790-5180)

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금연구역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b>3. <u>시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</u></b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금연구역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3.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, 택시승차대</b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금연구역의 표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, 크기와 설치방법,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금연구역의 표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</u>」 제6조 제3항의 <u>별표2</u>를 준용한다</p>
<p><u>제7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<u>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<u>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

# 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관할관청"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2. "정류소"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3. "택시 승차대"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·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.

## 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
별표2

###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(제6조제3항 관련)

#### 1.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

##### 가. 표지 부착

- 1)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2)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, 그 외 계단,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.
- 3)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.

##### 나. 표지 내용

- 1)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가)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
(예시)
-
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금 연 건 물</div> <span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건물&gt;</span>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금 연 시 설</div> <span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시설&gt;</span>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금 연</div> <span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그 밖의 경우&gt;</span>

나) 위반시 조치사항

(예시)

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,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2)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,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.
- 3)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- 4)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.  
: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○○○ - ○○○○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
가. 흡연실의 설치 위치

- 1) 법 제9조제4항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,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·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)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,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나. 흡연실의 표지 부착

- 1)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

(예시)

- 2)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,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.
  - 3)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  - 4)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,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- 다. 흡연실의 설치 방법

- 1)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2)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)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